

의안 번호	1958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b>검 토 보 고 서</b>
----------	------	---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7. 11.(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2. 7. 11.(월)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2. 7. 29.(금)

## 2. 제안이유

- 민선8기 구정목표에 맞추어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조직 운영을 위해 그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정원의 총수를 “694명”에서 “697명”으로 3명 증원, 집행기관의 정원을 “673명”에서 “677명”으로 4명 증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1명”에서 “20명”으로 1명 감원 (안 제2조)
-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 제4조 별표 3)
  - 1) 총 계 : 694명 → 697명(증 3명)
  - 2) 일반직 : 691명 → 694명(증 3명)
    - 6급 이하 : 640명 → 643명(증 3명)

## 4. 근거법규

- 가. 「지방자치법」 제125조
-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조직운영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집행기관의 정원을 “673명” 에서 “677명” 으로 4명 증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1명” 에서 “20명” 으로 1명 감원 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근 거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분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